#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83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박성민·고동진·구자근

김기현 • 박준태 • 김성원

강민국 · 정동만 · 서일준

이헌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 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사업장인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 랜드가 되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되는 매력있는 상권을 육성

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함.

이에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6조의11 등)

# 주요내용

- 가.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등록·취소·지원 및 관리·감독, 등록 등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
- 나.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관리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발전기금 을 재원으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상권기획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26조의9 및 제26조의 10 신설).
- 다. 지역상권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결성하는 상권 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등록·취소 및 업무수행·투자의무·투자자의 특례·결산보고·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8호,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24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상권기획자"란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실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7. "상권발전기금"이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6조의 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 8. "상권투자조합"이란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26조의11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장제2절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상권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다만, 제1호의 업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하는 자로서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시설·인력, 자본금 또는 재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1. 지역상권 발전전략 기획ㆍ수립 및 실행
-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 3.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및 투자
- 4. 지역상권 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및 관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상권기획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상권기획자 업무를 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권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상권기획자의 지역상권 발전 기획 및 소상공인 지원 의무)
  ① 상권기획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날까지 전체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 유예기간 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기획자의 지출 의무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4(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상권기획자가 제26조의2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의5(상권기획자에 대한 관리·감독) ① 상권기획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조직과 인력
  - 2. 운영 성과
  - 3.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발전에 사용한 금액
  - 4. 제26조의8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5. 그 밖에 상권기획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권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가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상권기획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6(상권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 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의7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제26조의8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제26조의7(상권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상권기획자는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의8(상권기획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6조의3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파산,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권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시정명령·경고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9(상권발전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의 10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상권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상권 구성원의 출연금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보조금
- 3.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 4. 그 밖에 기업·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의10(상권발전기금의 운용 등) ① 상권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상권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지역상권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 지역상권의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3.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등 역량강화 사업
  - 4.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상권기획자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26조의11(상권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상권기획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권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 ③ 상권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기획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상권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 운영 중에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상권기획자가 상권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 ⑥ 상권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12(상권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권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권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4.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주 거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 부를 그 상권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

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상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13(상권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상권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이 지난 날까지 전체 사용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 상을 활성화구역 내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 하여야 한다.
  -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상권투자조합의 출자금 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각 상권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투자조합이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14(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상권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상권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상권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제26조의15(임차상인 조합원의 특례) ① 상권투자조합이 상권 투자한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상인 조합원은 자신이 직접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방법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임차상인 조합원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있다.

- 제26조의16(상권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상권투자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17(상권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권투자조합에서 탈 퇴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26조의18(상권투자조합의 해산) ① 상권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상권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
  - 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

- 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상권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19(상권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26조의1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상권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0(상권투자조합의 공시) ① 상권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2. 그 밖에 상권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21(상권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6조의1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제26조의13을 위반하여 상권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의14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 · 운용한 경우
- 6. 제26조의16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업무집행조합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시정명령·경고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22(상권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상권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의23(비밀누설의 금지) 상권기획자 및 상권투자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권기획자 또는 상 권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상권기획자, 상권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 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 를 끼친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
  - 가.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나.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 2. 제26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36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 6. 제26조의2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8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1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12제6항 또는 제26조의20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6.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12제6항 또는 제26조의16를 위반하여 결산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7. 제26조의12제5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조사를 거부하 거나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9. 제26조의24를 위반하여 상권기획자, 상권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상권기획자"란 지역상권 발
	전전략의 기획・실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6조의
	2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
	<u>다.</u>
<u>&lt;신 설&gt;</u>	7. "상권발전기금"이란 지역상
	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
	여 제26조의9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
	<u>다.</u>
<u>&lt;신 설&gt;</u>	8. "상권투자조합"이란 상권기
	획자가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결성하
	는 조합으로서 제26조의11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26조의2(상권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다만, 제1호의 업무
	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
	으려는 법인은 시설·인력, 자

본금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역상권 발전전략 기획·수 립 및 실행
-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 동사업의 운영
- 3.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 보육 및 투자
- 4. 지역상권 내 상업용 부동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및 관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상권기획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후 계속하여 상권기획자 업무를

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 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권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상권기획자의 지역상 권 발전 기획 및 소상공인 지원 의무) ① 상권기획자는 제26조 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날까지 전체 지출금액의 100분 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 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 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u><신</u>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기획자의 지출 의무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4(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기획자가 제26조의2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의5(상권기획자에 대한 관 리·감독) ① 상권기획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조직과 인력
  - 2. 운영 성과
  - 3.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발전에 사용한 금액
  - 4. 제26조의8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5. 그 밖에 상권기획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권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기획자가 제3항에 따른 경영실 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 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상권기획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6(상권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 권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관 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신 설>

경우

- 2. 제26조의7에 따라 등록을 말 소한 경우
- 3. 제26조의8에 따라 등록을 취 소한 경우

제26조의7(상권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상권기획자는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 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8(상권기획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6조의2제1항에 따 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6조의3에 따른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은 경우
- 4. 파산,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상권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시정명령·경고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9(상권발전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 26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발전기금 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상권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상 권 구성원의 출연금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 3.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 4. 그 밖에 기업·금융기관 또 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출 연금 또는 차입금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10(상권발전기금의 운용등) ① 상권발전기금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상권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u>다.</u>

- 1. 지역상권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 지역상권의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3.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 보육 등 역량강화 사업
- 4.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 의 사업을 상권기획자에게 위탁 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의11(상권투자조합의 결성 과 등록 등) ① 상권기획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 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 용을 받으려고 하는 조합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권투자조합

- 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 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상권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업무집행조합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기획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④ 상권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조합 운영 중에다른자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상권기획자가 상권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 ⑤ 상권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

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
- 제26조의12(상권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권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상권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에 투자하는 행위
- 4.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5.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부 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 는 행위
-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 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 의 일부를 그 상권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 조합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 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 조합의 재산으로 상권 투자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 • 추 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상권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상권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사용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활성화구역 내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상권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각 상권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투자조합이 투자회수·경영정 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 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투자조합의 투자 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14(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권투자
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

다.

<u><신 설></u>

- 1. 상권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 라 한다)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상권투자조합 재산의 <u>보관</u>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상권투자 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제26조의15(임차상인 조합원의 특례) ① 상권투자조합이 상권 투자한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상인 조합원은 자신이 직접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방법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임차상인 조합원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조합

<u><신</u>설>

<신 설>

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6조의16(상권투자조합의 결산 보고) 상권투자조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 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17(상권투자조합 업무집 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권투자조 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
     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
     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수
  -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6조의18(상권투자조합의 해산)

① 상권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 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 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상권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선임할 수 있다.

③ 상권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9(상권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26조의18제2항에 따른 청산

<신 설>

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 는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상권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20(상권투자조합의 공시)

- ① 상권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2. 그 밖에 상권투자조합의 운 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21(상권투자조합 등록의 취소)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

소, 1년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 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 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6조의11제1항에 따 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경우
- 3. 제26조의12를 위반하여 업무 를 수행한 경우
- 4. 제26조의13을 위반하여 상권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의14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 6. 제26조의16을 위반하여 결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업무집행조합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 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신 설>

<신 설>

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시정명령·경고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2(상권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상권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3(비밀누설의 금지) 상 권기획자 및 상권투자조합의 임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 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4(유사명칭의 사용 금 지) 이 법에 따른 상권기획자 또 는 상권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상권기획자, 상권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 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 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 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 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 <u>한</u>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하
<u>당하는 자</u>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 에 손해를 끼친 자율상권조합 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 리자

> 가.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 을 사용한 경우

> 나.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 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 나 이용한 경우

2. 제26조의12제2항에 따른 금 지행위를 한 자

(2)	 	 	 

1. ~ 4. (생 략) <u><신 설></u>

<신 설>

5. (생략)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3. (생략)
  - 4. <u>제24조제2항</u>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11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
   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한 자
- 6. 제26조의2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자
-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

\_\_\_\_\_

-----

---

- 1. ~ 3. (현행과 같음)
- 4. <u>제24조제2항, 제26조의2제1</u> 항, 제26조의11제1항----
  - 5.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12
     제6항 또는 제26조의20제1항
     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6.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12
     제6항 또는 제26조의16를 위반하여 결산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u> &lt;신 설&gt;</u>	7. 제26조의12제5항에 따른 실
	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지
	<u>않은 경우</u>
<u>&lt;신 설&gt;</u>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u>5</u>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경영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u>&lt;신 설&gt;</u>	9 <u>. 제26</u> 조의24를 위반하여 <u>상권</u>
	기획자, 상권투자조합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u>5</u> .· <u>6</u> . (생 략)	<u>10.</u> ・ <u>11</u> . (현행 제5호 및 제6호
	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